

샘플  
COVID-19 관련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

[날짜] \_\_\_\_\_  
[임대주 이름] \_\_\_\_\_  
[임대주 주소] \_\_\_\_\_  
이메일로 전송 \_\_\_\_\_ [이메일 주소]  
회신: 합당한 제공 요청

\_\_\_\_\_ 편의의 님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다음 주소지의 임차인입니다. \_\_\_\_\_  
[주소]. 본인은 장애로 인해 합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합니다.

본인의 장애: [해당하는 보기에 체크하십시오]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의 정의에 따라 한 가지 이상의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여(42 U.S.C. 3602(h)) COVID-19 감염 위험을 높이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본인은 발생 가능한 노출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인식이나 진단이 가능하며 RCW 49.60.040 (7)로 보호되는 감각 또는 신체 장애. 본인은 발생 가능한 노출 활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합당한 편의로써 다음을 부탁드립니다.

[해당하는 보기에 체크하십시오]

- 본인의 건강에 위험이 되므로 본인의 주택 응급 점검을 중지해주십시오.
-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본인이 따를 수 없는 다음 정책을 철회해주십시오:  
\_\_\_\_\_.

팬데믹으로 인해 준수할 수 없는 \_\_\_\_\_의 기한을 \_\_\_\_\_ [나중 날짜]로(으로) 연장해주십시오.

우편 임대료 납부 기한을 통상적인 납부일로부터 \_\_\_\_\_ [숫자] 일 동안 연체료 없이 연장해주십시오. 통상적으로 했던 방식대로 직접 임대료를 내기 위해 집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질병에 걸린 동안 본인의 일을 처리해줄 \_\_\_\_\_ [이름] 과 상의해주십시오.

[월]의 임대료 납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를 철회해주십시오 (면제해주십시오).

기타: \_\_\_\_\_

합당한 편의 제공 요청

COVID-19 감염에 더 취약해지는 장애를 가진 거주자는 COVID-19 접촉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당한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

- 거주자는 세탁실을 청소 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거나 다른 거주자가 없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의 정기 점검 연기를 요청하거나 직접 점검을 대신하여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 임대주에게 수리를 위해 주택에 들어오는 직원의 수를 제한하고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합니다.
- 주택 제공자에게 임차인이 비울 주택을 한 번에 한 명의 입주 희망자에게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COVID-19로 인해 주택 제공자가 지정한 규칙에 예외를 적용하는 합당한 편의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

- 개인 간병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해당 건물에 방문자 출입이 금지되었거나 방문자를 제한하는 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방문 간병인을 계속 이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NORTHWEST

FAIR HOUSING ALLIANCE (공정 주택 연합)

35 W. Main Ave., Suite 250, Spokane, WA 99201

전화: (509)-325-2665 / 1-800-FAIR (3247)

팩스: -866-376-6308 / www.nwfairhouse.org

저희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본 간행물의 토대를 마련한 작업은 일부분 미국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보조금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NWFHA는 본 간행물에 포함된 진술과 해석의 정확성에 대한 단독 책임이 있습니다.

2021년 1월

Korean



COVID-19의 영향을 받은  
보호 계층의 공정 주택  
권리



NORTHWEST  
FAIR HOUSING  
ALLIANCE

“모두를 위한 주거 평등을 위해 노력합니다”

(509)-325-2665

1-800-200-FAIR (3247)

www.nwfairhouse.org

COVID-19 질병 발생률과 치사율은 모든 워싱턴주 주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라틴, 아시아, 태평양 섬 주민, 흑인, 토착민, 유색인종 및 장애인에게 COVID-19가 발생할 확률 및/또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들이 주택 차별이나 주택 상실을 겪을 위험은 더 높아집니다.



연방 공정주택법(Fair Housing Act)은 임대 주택 신청인, 임차인, 주택 소유자, 잠재 주택 구매자를 인종, 피부 색, 종교, 성별, 출신 국적, 가족 상태 또는 장애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합니다.

또한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ashington State Law Against Discrimination) (WLAD, RCW 49.60)은 병역 또는 제대 군인 지위, 신념, 결혼 여부, 성적 지향성 및 이민자 또는 시민권 상태에 따른 주거 차별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주택 제공자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귀하에 대한 주택 공급을 거부하거나 귀하를 차별 대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 공정 주택 법률은 COVID-19 관련 주택 차별로부터 귀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한하는 COVID-19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또는 COVID-19 감염 병력이 있는 사람,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주택법은 또한 COVID-19 최초 발생 또는 발병과 관련된 지역의 출신자 차별을 포함한 출신 국적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 공정주택법에 따라 주택 제공자는 다음을 할 수 없습니다:

- COVID-19 감염 증거 없이, 해당 주거 커뮤니티에서 COVID-19가 유행한다는 추정만으로 보조 생활시설에서 온 사람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귀하에게 장애로 인하여 COVID-19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은지 질문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질병이나 장애를 다른 임차인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생각을 이유로 귀하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귀하께서 장애 증상으로 인해 앰블런스를 불렀다는 이유로 귀하의 주택 임대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 귀하를 COVID-19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귀하와 다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건물의 특정 구역에 격리할 수 없습니다
- 출신 국적과 전염병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임차인 간의 괴롭힘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귀하에게 질병이 있는 것 같고 COVID-19에 걸렸다고 추정하여 귀하의 주택 임대를 종료할 수 없습니다

주택 제공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귀하에게 필요한 합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규칙의 변경 또는 예외) (예를 들어 귀하께서 COVID-19에 접촉한 경우 보조 생활시설 내에 개인실이 있다면 임시로 해당 개인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 제공자는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입주자와 방문객이 COVID-19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등의 권장 또는 의무 공공안전조치를 준수하도록 합니다
- 주거시설 내에서 주민들에게 COVID-19 진단이 실시되었음을 알립니다 (하지만 이름, 호수, 기타 감염자 식별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주택 입주 시 또는 공용 공간 출입 시 COVID-19 증상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 임차인이나 신청인에게 COVID-19 감염이나 코로나바이러스 노출을 자발적으로 알리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해당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편의 제공이 장애에 필요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진단이나 장애에 대한 상세 설명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